



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

톤세제 시행위한 관련법령 개정작업 마무리

재정경제부는 3월11일 톤세제 시행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공포,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

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31일 톤세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한 데 이어 금년 2월19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다.

특히, 톤세제 시행을 위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은 한국선주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외항해운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으며,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령의 공포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비롯하여 톤세적용 신청 절차, 톤세 과세표준 신고양식 등이 마련되는 등 톤세제 시행관련 제반 법령개정작업이 마무리됐다.

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령은 다음과 같다.

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46조의3(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) ①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"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해서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.

②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"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"이라 함은 「국제선박등록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.

1.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

2. 당해 기업이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

③영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항 순톤수는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(영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)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.

④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나목에서 "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" 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.

⑤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바목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"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·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.

⑥영 제104조의8제10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"이라 함은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5조(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			
신	①법 인 명		②사업자등록번호
청	③대표자 성명		④주민등록번호
인	⑤본점 소재지	(㉠)	
⑥특례적용대상기간	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1.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			
⑦연간운항순톤수 산출 기준일		년	월 일
⑧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			
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			
2. 요건충족 여부(㉠)			
⑧ ≤ [⑨×5]		<input type="checkbox"/> 요건 충족	
⑧ > [⑨×5]		<input type="checkbox"/> 요건 미충족	
<p>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출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무서장 귀하</p>			
구비서류 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 (다만,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함)			수수료 없음

210mm × 297mm(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)

[작성요령]

- | | |
|--|--|
| <p>1. 신청인란(①란 내지 ⑤란)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.</p> <p>2.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.</p> <p>3. ⑦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다.</p> <p>4. ⑧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1</p> | <p>항에 의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</p> <p>5. ⑨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</p> <p>6. ㉠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에 표기하고,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.</p> |
|--|--|



[별지 제64호의7서식]

(앞 쪽)

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					
신 청 인	①법 인 명		②사업자등록번호		
	③대표자 성명		④주민등록번호		
	⑤본점 소재지	(ㅅ)			
⑥특례적용대상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	
1.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					
⑦연간운항순톤수 산출 기준일	년 월 일				
⑧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					
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					
2. 당해 사업연도 요건충족 여부(㉑)					
⑧ ≤ [⑨×5]			<input type="checkbox"/> 요건 충족		
⑧ > [⑨×5]			<input type="checkbox"/> 요건 미충족		
3. 과거 사업연도 요건충족 여부(㉒)					
사업연도	~	~	~	~	~
요건충족					
요건미충족					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합니다.					
제출인			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		
세무서장 귀하					
구비서류 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				수수료	
(다만,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함)				없음	

210mm × 297mm(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)

[작성요령]

1. 신청인란(①란 내지 ⑤란)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.
2.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.
3. ⑦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다.
4. ⑧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5. ⑨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6.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에 표기하고,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.
7. ㉑란은 ⑥란에 기재한 특례적용대상기간에 속하는 각각의 사업연도의 요건충족여부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" "를,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" "를 각각 표기합니다.